<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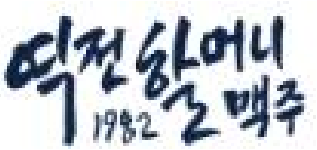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등 록 번 호 : 20161219 최초 등록일 : 2016.12.13 최종 등록일 : 2025.12.09	가맹본부 홈페이지 주소 http://yukjunfnc.kr/ 대표 이메일 주소 yeokjeon1982@yeokjeonfnc.com



정 보 공 개 서

역전할머니맥주1982가맹사업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역전에프앤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7호-1412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 전화번호] 1544-7624 [대표 팩스번호] 02-3144-7878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 1544-7624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역전F&C	역전할머니맥주1982 외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7호-1412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10.27	2016.11.01	이병윤, 박봉섭	1544-7624	02-3144-7878
	법인등록번호	214911-0049570	사업자등록번호	388-81-00608	

2.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병윤/ ㈜역전F&C	역전할머니맥주 1982 외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7호-1412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병윤, 박봉섭	1544-7624	02-3144-7878
대표이사	박봉섭/ ㈜역전F&C	역전할머니맥주 1982 외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7호-1412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병윤, 박봉섭	1544-7624	02-3144-7878
기타비상무이사	박재용/ ㈜역전F&C	역전할머니맥주 1982 외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7호-1412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병윤, 박봉섭	1544-7624	02-3144-7878
기타비상무이사	신효식/ ㈜역전F&C	역전할머니맥주 1982 외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7호-1412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병윤, 박봉섭	1544-7624	02-3144-7878
기타비상무이사	이준우/ ㈜역전F&C	역전할머니맥주 1982 외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7호-1412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병윤, 박봉섭	1544-7624	02-3144-7878
감사	고종석/ ㈜역전F&C	역전할머니맥주 1982 외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7호-1412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병윤, 박봉섭	1544-7624	02-3144-7878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역전할머니맥주1982	
상 호	역전할머니맥주1982 OOO점	
상표(서비스표)	역전할머니맥주 1982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40-1266455-0000** **40-1431199-0000**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	99,083,915	12,910,893	86,173,022	108,617,947	9,943,842	4,335,806
2023	99,704,805	12,867,589	86,837,215	74,742,974	10,217,727	6,485,124
2022	57,892,435	11,935,795	45,956,639	92,869,222	27,772,259	22,049,982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관련	이병윤	대표이사	2022.05.18. ~ 현재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박봉섭	대표이사	2022.05.18. ~ 현재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박재용	기타비상무이사	2022.05.18. ~ 현재	이사	회사업무 관리
	신효식	기타비상무이사	2022.05.18. ~ 현재	이사	회사업무 관리
	이준우	기타비상무이사	2022.05.18. ~ 현재	이사	회사업무 관리
	고종석	감사	2022.05.18. ~ 현재	감사	회사업무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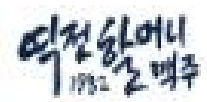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12-31	3	-	78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역전F&C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	지미존스 샌드위치(등록번호: 20251450)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번호	등록신청자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서비스표)	등록 2017.07.05	등록번호: 40-1266455-0000	㈜역전에프앤씨	존속기간: 2027.07.05. 허용기간: 가맹사업 종료 시까지
	상표 (서비스표)	등록 2018.12.27	등록번호: 40-1431199-0000	㈜역전에프앤씨	존속기간: 2028.12.27. 허용기간: 가맹사업 종료 시까지

▶ 귀하가 본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 및 실용신안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6년 11월 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1. 08. 24)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역전F&C	역전할머니맥주	김현선 소종근	2016.11~ 2019.10.27	전북 익산시 하나로 461 금송빌딩3층
㈜역전F&C	역전할머니맥주	소종근	2019.10.28.~ 2022.05.17	전북 익산시 하나로 461 금송빌딩3층
㈜역전F&C	역전할머니맥주	박봉섭, 이병윤	2022.05.18.~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7호-1412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3. 역전할머니맥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역전할머니맥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주점	맥주 및 호프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3-01-01			2024-01-01			2025-01-0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61	859	2	926	923	3	968	963	5
서울	102	101	1	123	121	2	136	132	4
부산	60	60	-	61	61	-	62	62	-
대구	57	57	-	59	59	-	61	61	-
인천	45	45	-	52	52	-	53	53	-
광주	38	38	-	39	39	-	41	41	-
대전	36	36	-	37	37	-	39	39	-
울산	25	25	-	25	25	-	23	23	-
세종	4	4	-	4	4	-	5	5	-
경기	190	190	-	207	207	-	218	218	-
강원	15	15	-	17	17	-	17	17	-

충북	25	25	-	26	26	-	28	28	-
충남	37	37	-	38	38	-	39	39	-
전북	54	53	1	56	55	1	57	56	1
전남	54	54	-	54	54	-	54	54	-
경북	43	43	-	46	46	-	49	49	-
경남	62	62	-	68	68	-	72	72	-
제주	14	14	-	14	14	-	14	14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783	77		1	141	859
2023	859	69		5	166	923
2024	923	58		18	109	963

명의 변경의 경우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 전원이 변경된 경우만 포함하였고, 가맹점사업자 번호는 그대로이면서 대표자명만 변경된 경우(직계가족의 명의 추가 등)는 제외하였습니다.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역전F&C	지미존스 샌드위치	20251450	패스트푸드	0/0	0/0	0/2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 산정기준

[역전할머니맥주1982]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963	430,227	14,322	1,559,433	50,492	54,908	1,893	938곳 산정
서울	132	639,082	20,775	1,538,098	43,851	227,482	10,368	129곳 산정
부산	62	471,466	14,978	1,214,578	30,669	75,518	3,975	61곳 산정
대구	61	317,561	12,374	653,835	28,096	99,216	3,543	60곳 산정
인천	53	440,797	14,981	1,559,433	31,129	193,266	6,471	52곳 산정
광주	41	383,700	10,677	809,750	18,692	205,905	4,513	41곳 산정
대전	39	469,081	13,341	1,138,220	43,778	155,910	6,673	37곳 산정

울산	23	344,816	10,510	631,824	18,722	134,338	3,185	21곳 산정
세종	5	457,079	16,804	671,669	27,986	251,247	7,614	5곳 산정
경기	218	452,301	15,938	1,120,172	50,492	54,908	1,893	209곳 산정
강원	17	339,456	11,933	507,309	19,601	217,369	6,211	17곳 산정
충북	28	383,126	11,789	541,175	20,455	150,986	6,291	26곳 산정
충남	39	389,838	12,841	762,398	31,810	139,615	5,992	38곳 산정
전북	56	292,007	10,626	772,538	21,805	89,664	3,092	54곳 산정
전남	54	329,133	10,525	1,103,397	45,975	110,284	4,379	54곳 산정
경북	49	343,562	11,079	581,725	20,265	161,980	4,542	48곳 산정
경남	72	373,338	12,794	1,052,074	27,686	168,209	5,301	72곳 산정
제주	14	412,372	13,026	762,899	18,130	213,893	6,900	14곳 산정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23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역전할머니맥주1982]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4	963	1599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역전할머니맥주1982]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2024.01~2024.12	6,077,642	-	-	-
	(비공개)					

▶ 광고 세부내역은 구분하기가 어려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판촉비용은 전액 가맹점 지원비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	-	1599-1114(콜센터)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 가맹본부가 가맹점 예치 사전등록 진행 후 가맹점주가 '하나은행 에스크로(www.kebhana.com)' 홈페이지 접속하여 가맹점주 명의 공인인증서로 예치신청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별도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임대관련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개업시 소요되는 실비용으로 협의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7,7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or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미만인 경우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가맹 사업법 제 10조의 경우 본사가 규정한 위약금 공제 후, 일부 반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교육이 개시되면 반환 불가

※ 상기의 가맹비는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20%)와 영업표지 사용의 허락에 대한 대가(30%), 매뉴얼 등 자료제공의 대가(30%), 기타 개업지원 대가(20%)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총계	2,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부가세 포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가맹비	7,700
교육비	3,300
(현금)계약이행보증금	2,000
합계	1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49.5㎡[15평])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내외공사)	협력업체	33,000	2,200	공사 시작 1일 이전	공사 발주 전 계약해지	3.3㎡늘어날 때마다 1,870천원 추가부담
의자,테이블	가맹본부	7,260		공사 시작 1일 이전	물품 공급 전 계약해지	매장에 따라 변동가능
간판/사인/어닝 (내부포함)	협력업체	9,460		공사 시작 1일 이전	공사 발주 전 계약해지	매장에 따라 변동가능
필수설비(주방집기 및 기기)pos포함	협력업체	19,250	1,283	공사 시작 1일 이전	물품 공급 전 계약해지	매장에 따라 변동가능
최초공급상품	가맹본부	2,200		개점일 1일 이전	물품 공급 전 계약해지	상호협의
	협력업체	5,500				
총계		76,670	3,483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별도비용 : 철거, 닥트, 소방시설, 전기증설, 냉난방기, 가스, 정화조, 화장실, 상하수도, 외장파사드, 어닝, 의탁자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점포공사부분에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점포설비 및 도면 등과 관련된 노하우 제공 및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른 설계·시공의 준수여부 확인. 가맹본부 직원 감리 등에 따르는 비용으로 **3.3m²당 400,000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시공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에쓰프레시는 2023. 3. 3. 스마트푸드네트웍스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해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하 ㈜ 에쓰프레시 해당 내용은 모두 스마트푸드네트웍스 주식회사로 갈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 후견인이 아닐 것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Ⅴ.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공급대가의 6% (월 공급대가는 배달을 포함하며, 배달 공급대가의 경우 로열티 부과율은 5%)	익월 5일 이내	없음		- 공급대가 중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 주화로 결제되는 금액은 로열티 산정 금액에서 제외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후	Ⅴ.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미 시행시 반환	시행 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본사 규정에 따름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시 반환	시행 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12조의 2 규정에 의함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

교체・보수비용						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시 부담

※ 귀하가 주류 및 식자재 전체의 구입을 가맹본사 또는 본사협력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로열티 중 매월 공급대가의 1%**(vat별도)**를 감면하며, 귀하가 가맹본부의 광고 집행을 위해 본사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KT사장님TV('구'KT우리가게TV)"** 가입을 진행하고 가맹본부의 광고 정책에 협조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공급대가의 1%**(vat별도)**를 지급한다.

※ 당사의 광고 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매출액은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매장운영 메뉴얼, 메뉴판, 식자재, 주류)	가맹본부요청시	문의: 가맹관리팀 1544-7624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가맹본부요청시	문의: 가맹관리팀 1544-7624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역전할머니맥주1982]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예정일 2개월 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에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가맹점 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거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종료되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BI, 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양수인, 영업임차인은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지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원할 경우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역전할머니맥주1982]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종료 시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간판· 서비스표, 지식재산권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가맹사업자에게 있으며 ,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며, 당 가맹사업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지체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지체 및 위반기간에 대하여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특허 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노하우에 대해 계약종료 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일(日) 당 일금 오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특허를 이용한 호프냉장고 및 맥주 숙성고(냉장고)의 공법을 이용한(행위, 방법, 매뉴얼, 규정집, 문서, 도면, 도서 등) 노하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1. 생맥주 공급장치 2. 슬러시 맥주의 제조방법 및 이에의해 제도된 슬러스 맥주 ③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 시 가맹본사 임직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사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판매,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기기 제외)의 반환은 물품의 재고량,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물품(기기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별첨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역전할머니맥주1982]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역전할머니맥주1982]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점포설비 및 도면 등과 관련된 노하우 제공 및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른 설계·시공의 준수여부 확인. 가맹본부 직원 감리 등에 따르는 비용으로 **3.3m²당 400,000원**(부가세 별도)을 디자인 및 설계실사 컨설팅비로 받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역전할머니맥주1982]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경쟁사 외 타브랜드 가맹점사업자 등 제3자 및 미성년소비자	※별첨[공급상품 리스트] 참조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판매상품리스트] 참조		POS를 통한 개시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해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영업 표시	
	가맹본부	계열 회사
맥주 및 호프류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역전할머니맥주1982	해당없음

▶ 특수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가 특수상권에 입점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상권만을 영업지역으로 봅니다.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의 이격거리를 500m를 기준으로 하되, 상권특성 및 지형지물로 상권이 단절되는 경우를 종합하여 정하며(지형지물 : 산, 하천, 4차선도로 이상, 공원 ,지하철, 철로, 담벼락, 고가도로 등), [별첨 1 : 영업지역]의 지도상에 표기된 지역으로 확정하며, 그 범위 내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내 지하상가, 공항, 호텔, 종합병원 등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보며, 특수상권에 입점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상권만을 영업지역으로 본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급격한 상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배달 포함)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역전할머니맥주198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9.59%	0.41%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4조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17조 1항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1. 상품대금, 정기납입비 등의 금전적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 매출정보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가맹본부의 가맹점영업기준이나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및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및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통 제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추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6. 제20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가맹사업자 점포의 규모, 위치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8.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9.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용 및 가맹본부 매뉴얼 등의 정보를 외부 누출하는 경우
10.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11. 충분한 보험 가입하지 않아 가맹본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12.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13. 상품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제품 이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요구 필수 품목을 직접 구매하는 등 영업의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14. 가맹본부가 정한 제 9조 1항의 필수교육을 이행 및 참석, 수료하지 않은 경우
15.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실내외 공사를 완료하고도 1개월 이상 영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한 경우
16.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17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영업을 승계하거나,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거나, 동업자 간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동업자 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업양수인의 요청이 있다면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단,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상속되어 교육비 면제되는 경우, 교육비 지급 의무 없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서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역전할머니맥주1982]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맥주나 호프류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4:00 ~ 02:00(12시간)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영업일 준수	문의: 가맹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점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관리팀	통상 QSC관리
회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역전할머니맥주1982]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행사비의 30%	행사비의 70%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월별 판촉 행사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당사는 원칙적으로 광고 및 판촉행사에 따른 가맹점부담액을 분담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하며,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5조 (광고와 판촉)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나 판촉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20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종료 후 1년간 기존의 영업지역(혹은 가맹점 소재지가 속한 행정구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 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7조 (계약의 해지)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각 조항에 위약금이 있을 경우 그 조항이 본조의 위약금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일금 삼십만원(₩3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관련 계약조문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18조 (계약종료 후 조치 등)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며,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지체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지체 및 위반기간에 대하여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특허 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노하우에 대해 계약종료 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일(日) 당 일금 오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특허를 이용한 호프냉장고 및 맥주 숙성고(냉장고)의 공법을 이용한(행위, 방법, 매뉴얼, 규정집, 문서, 도면, 도서 등) 노하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1. 생맥주 공급장치 (등록 번호: 1018258750000)
2. 슬러시 맥주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슬러시 맥주 (등록 번호: 1018164760000)

③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 시 가맹본사 임직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사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판매,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⑥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① 계약서 제20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뚜렷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형사처분/위생 및 안전의 위해 등)로 인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의 훼손 및 타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뚜렷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49.5㎡ 15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정도	**80,96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10곳 가맹점 리스트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13,0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공사, 주방기기 등 총 시설	- 공사실시, 주방집기, 기기, 간판,등	**약 22일**	**67,96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점포 공사중 진행)	**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하거나(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차후 진행시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사전협의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CRM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Q,C,S 지원	가맹점 운영시 제품의 품질, 매장 청결,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상위 점수 70개점	3개월	로열티 면제 및 감면	상위 20개점은 면제, 나머지 50개점은 감면
LSM 지원	지역 단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LSM 신청 가맹점	3개월	홍보물50%금액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POS교육 ,식자재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합숙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상품, 서비스 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통지 후 7일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보수 교육	위생교육,레시피 교육,서비스 교육 등	실습 및 강의	통지 후 14일내	해당 매장 이수

2. 교육 스케줄

	시간	담당자	메인항목	세부내용	교육목적	필요자료	제공품목
1 일 차	13시 50분	교육팀	교육일정	- 교육 커리큘럼	교육 스케줄 숙식 제공 관련	교육자료 (1부 제공)	레시피북(1부) , 과목별 교육자료(1부) , 유니폼,모자 앞치마 (개별필수구매)
			유니폼, 초도 주류발주, 싸이패스, 서류 안내	- 유니폼 종류 - 초도 주류발주 - 싸이패스 프로그램 안내 - 인허가서류 안내	유니폼착용통일성 신분증 위변조확인 중요성		
	14시 00분		회사 소개	- 브랜드 스토리	역전할머니맥주 브랜드 출범배경 및 과정이해		
	14시 30분		CS교육	- 서비스 마인드 - 고객 응대 방법 - 접객 멘트 - 클레임 대처방안	서비스 마인드 고취		
	16시 00분		위생/설비 기초교육	- 위생 법규 이해 - 설비, 공법 - 위생교육 - 식자재관리	시설, 설비에 대한 이해 식품위생 관리의 이해		
	17시 30분		운영매뉴얼	- 물류 시스템 - SV역할 안내 - 운영시스템 - 신분증 검사 중요성	가맹점 운영 표준시스템의 이해		
	18시 00분		오픈 D-2 매뉴얼	- 오픈 D-2 필수 준비사항	가맹점 운영 표준시스템의 이해		
	19시 00분		Q & A	- 질의/응답 - 가맹점 운영 주의사항 사례공유	가맹점 창업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운영 주의사항의 이해		
	과제	매뉴얼 복습 및 레시피북 예습					

	시간	담당자	메인항목	세부내용	교육목적	필요자료	제공품목
2 일 차	14시 00분	교육팀	프로그램 사용법	- POS 사용법 - 식자재 발주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이해	레시피북 (1부) , 간단 레시피 (1부)	실습용 식재료일체 메뉴판(대여) 유니폼, 모자(대여) 교육생 명찰(대여)
	14시 30분		설비, 시설 관리 및 이해	- 냉동, 냉장설비 관리 - 주류공법, 케그 - 기타설비	주류공법의 이해		
	15시 00분		일일업무 (오픈)	- 주류, 식자재 입고 확인 - 식사재 소분 - 일일실자재 준비 (염통, 채소, 땅콩)	오픈 필수업무		
	17시 00분	교육팀	레시피 이론교육	- 레시피북 브리핑	실습전, 레시피 이해도 향상		
	18시 00분	석 식					석식제공
	19시 0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메뉴, 고객응대 교육	- 주요메뉴 만들기 시범 - 메뉴이미지 촬영 - 고객응대법, 멘트, 호프	메뉴, 레시피의 이해	레시피북 (1부) , 간단 레시피 (1부)	실습용 식재료일체 메뉴판(대여) 유니폼, 모자(대여) 교육생 명찰(대여)
	20시 0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역전할머니 맥주 트렌드 인사법	- 환영인사 실습 - 배웅인사 실습 - 고객응대멘트 실습	인사법에 따른 고객반응 확인		
	21시 0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메뉴 실습	- 1차 실습 (주문메뉴 실습)	메뉴실습 주방적응		
	23시 30분	휴게시간					
	26시 0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마감교육	- POS 영업마감 - 케그마감 - 주방마감 - 기름정제 및 교체	홀, 주방 마감 이해		

	시간	담당자	메인항목	세부내용	교육목적	필요자료	제공품목
3 일 차	15시 00분	교육팀	외부시설 점검	- 영업전 외부시설점검	파손, 훼손에 대한 점검 및 보수처리	레시피북 간단 레시피	실습용 식재료일체
	15시 30분		식자재관리 주류관리	- 주류, 식자재 입고 확인 - 식사재 소분 - 일일실자재 준비 (염통, 채소, 땅콩)	식자재, 주류입고에 대한 검수 및 재고관리		
	16시 00분		물류발주 영업개시	- 식자재 실 발주 - POS영업개시 - 케그이동, 연결, 수량체크	영업개시과정 반복학습		
	16시 30분	교육팀	메뉴실습	- 전일 미실습 메뉴 진행 (2차 메뉴실습)	전메뉴 레시피교육 완성		
	17시 30분	석 식					석식제공
	19시 0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직영점 운영	- 고객응대 - 메뉴실습(3차) - 매장운영	직영점 실운영을 통한 표준메뉴얼 숙지	레시피북 간단 레시피	실습용 식재료일체
	21시 0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역전할머니 맥주 트렌드 인사법	- 환영인사 실습 - 배웅인사 실습 - 고객응대멘트 실습	인사법에 따른 고객반응 확인		
	21시 3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직영점 운영	- 고객응대 - 메뉴실습(3차) - 매장운영	직영점 실운영을 통한 표준메뉴얼 숙지		
	23시 30분	휴게시간					
	26시 0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마감교육	- POS 영업마감 - 케그마감 - 주방마감 - 기름정제 및 교체	홀, 주방 마감 이해		

	시간	담당자	메인항목	세부내용	교육목적	필요자료	제공품목
4 일차	13시 00분	교육팀	교육과정 테스트	- 설비 사용법 - 레시피	테스트실시 및 결과에 따른 보충교육 여부 판단	레시피북 간단 레시피	실습용 식재료일체
	15시 00분		외부시설 점검	- 영업전 외부시설점검	파손, 훼손에 대한 점검 및 보수처리		
	15시 30분		식자재관리 주류관리	- 주류, 식자재 입고 확인 - 식사재 소분 - 일일실자재 준비 (염통, 채소, 땅콩)	식자재, 주류입고에 대한 검수 및 재고관리		
	16시 30분	교육팀	물류발주 영업개시	- 식자재 실 발주 - POS영업개시 - 케그이동, 연결, 수량체크	영업개시과정 반복학습		
	17시 00분		메뉴실습	- 전일 미실습 메뉴 진행 (2차 메뉴실습)	전메뉴 레시피교육 완성		
	17시 30분	교육팀	저녁식사 or 실습메뉴 대체			·	석식제공
	19시 0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직영점 운영	- 고객응대 - 메뉴실습(최종) - 매장운영	직영점 실운영을 통한 표준메뉴얼 숙지	레시피북 간단 레시피	실습용 식재료일체
	22시 0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교육생 미팅	- 교육과정 이수체크 - Q & A	미팅, 상담을 통한 오픈시 예상 문제점파악	※ 교육과정 특이사항 운영팀 전달	
	23시 00분	교육 정상이수완료 및 퇴소					
	23시 00분	교육팀 / 직영점 점장	보충교육	- 미숙지 메뉴 추가실습	매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교육 진행	·	·

기타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시간은 축소 및 확대 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유 : 코로나19 등 재난, 재해로 인한 운영불가상황 등)

3.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35시간	3,300	
수시 교육	1~2일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보수교육	5시간	실비	기준 대상 매장 이수

※ 수시 및 보수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4.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5.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계약의 해지)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0조 (개시 승인)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전북	할맥 익산어양점(직)	전라북도 익산시 궁동로 100, 101호(어양점)
2	서울	할맥레드 서초타운점(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5길 9-13, 1층 101호
3	서울	할맥 서울사당점(직)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4길 20, 1층 102호(남현동, 다청림라인씨티)
4	서울	할맥레드 서울여의도점(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1층 110~114호(여의도동, 하남빌딩)
5	서울	할맥 서울독산역점(직)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8, 1층 102,103호(가산동, 고려테크온)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7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63,367	할맥 서울여의도점의 경우, 2024. 5. 9. 영업을 개시하여 바로 전 사업연도 말까지 약 8개월간 542,229,00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1년치로 환산하면 835,078,417원에 해당합니다.

▶ 당사의 직영점 1곳은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관리팀(1544-762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매장 운영 준수 사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매장 운영 계획법 예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교육 설문지 예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과 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강제함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상기의 설비리스트와 거래 상대방은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판매상품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원·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인테리어 업체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주류 업체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022, 2023, 2024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